

소형저장탱크 재검사기준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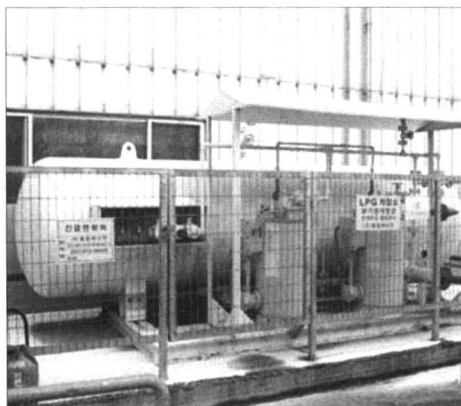
우리협회는 소형저장탱크 보급활성화 방안으로 소형저장탱크의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LPG수입사 등과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재검사주기가 개정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.

1. 저장탱크 재검사기준 (KGS PV003) 개정내용

□ 개정(안)설명

○ 소형저장탱크의 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함

- 탱크의 개방 없이 검사하는 외관검사 및 설치상태검사는 5년마다 실시
- 탱크를 개방하여 검사하는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 등은 탱크의 경과 년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10년마다,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



□ **신규 대비표**

현 행	개정안
<p>1. 일반사항</p> <p>1.1 적용범위 (내용 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1.2 참고 자료 (내용 생략)</p> <p>1.3 저장탱크의 분류 (내용 생략)</p> <p>1.4 용어의 정의</p> <p>a)~f)(내용 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g) (내용 생략)</p> <p>2 지상식 원통형 저장탱크 검사</p> <p><신 설></p>	<p>1. 일반사항</p> <p>1.1 적용범위(현행과 같음)</p> <p>1.2 기준의 효력</p> <p><u>1.2.1 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 제 2항 제4호에 따라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의결(안전번호 제07-4호, 2007년7월19일)을 거쳐 제정한 것으로서 「고압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」 제15-2-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“저장탱크의 재검사 방법 및 판정방법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</u></p> <p><u>1.2.2 이 기준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1.3 참고 자료 (현행과 같음)</p> <p>1.4 저장탱크의 분류 (현행과 같음)</p> <p>1.5 용어의 정의</p> <p>a)~f)(현행과 같음)</p> <p><u>g) “소형저장탱크”라 함은 액화석유 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.</u></p> <p><u>h)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2 지상식 원통형 저장탱크 검사</p> <p><u>2.1 검사 항목 및 재검사 시기</u> <u>지상식 원통형 저장탱크의 검사 항목 및 재검사 시기는 표 2.1과</u></p>

